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4 | 2024.07.15 (2024.07.08~07.1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08~07.14)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3.12)」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II)」**을 발표한바,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산업 지원 및 현장 애로·규제 해소를 위한 20건의 개선안을 발표하였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속도감있게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가동하여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조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조사업무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임에 따라,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위임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5년 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등록대부업자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화시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고,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는 등을 담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고,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도 간주하며,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각각 10%씩 상향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 참여의 선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해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병행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용수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등 13인)」**,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1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들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등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금주(7/15~7/21)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7/19)」,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7/16)」 등이 있을 예정이며, <농림축산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각각 농협중앙회, 보건복지부 등 소관 기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인사청문회가 다수 개최될 예정인바, <기획재정위>는 7/16(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무위>는 7/22(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과학기술방송통신위>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7/24(수), 7/25(목) 2회 실시할 예정, <환경노동위>는 7/22(월)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7/22),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7/24),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7/25) 후보자 3인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무위>는 7/17(수) 전체회의(간사선임, 소위구성, 인청계획서 채택)하고, 7/24(수) 비금융부처 업무보고, 7/25(목) 금융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민주당에서는 7/18(목), 7/25(목) 본회의 및 8월 임시회(8.5~31) 개최를 요구하며 여야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기획재정부) 9
-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기획재정부) 13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본격 가동(금융위원회) 15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9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9
-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20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 20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2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2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2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3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24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2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2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26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2인) 27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6인) 2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3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31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3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	32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9인)	3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3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38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38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3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3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21인)	40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8인)	41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1인)	42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4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등 14인)	43
•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송재봉의원 등 40인)	43
•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박수영의원 등 20인)	45
•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등 13인)	46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4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4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4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4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5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50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51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5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52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의원 등 11인)	5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53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54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의원 등 10인)	54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5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08~07.14) [바로가기](#)

- **[ESG]**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 삼림전용 방지 규정) :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 **[조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 **[지적재산권]** 가수의 성명(‘영탁’)을 자사의 상품에 무단사용한 행위에 대해 표지의 사용금지 및 생산된 제품의 폐기청구 인용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바이오/헬스케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에 수록된 보건·의료 분야 관련 주요 사례 소개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 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 지원	2024-07-10
-------	---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한바, 이번 대책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23.12)」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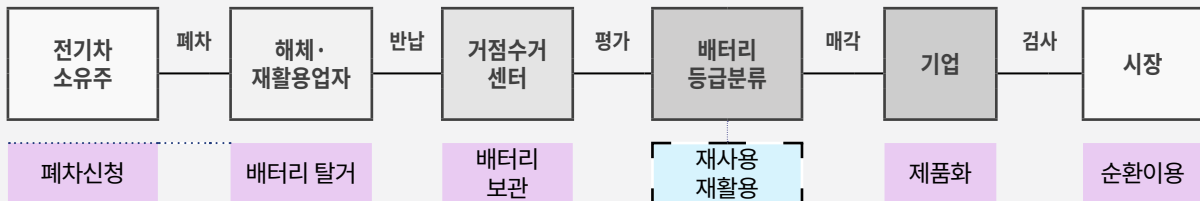
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법 제정

- **(일반규정)** 사용후 배터리 정의*, 사업자 등록, 국가의 책무 등
 - * 전기차 등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의 대상이 되는 배터리
- **(안전관리)**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 검사 및 사후검사 의무화
 - *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 배터리 탈거 전 재제조·재사용 가능여부 평가
- **(제도·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등 배터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신설 제도 규정
- **(정책위원회)** 사용후 배터리 관련 다부처 협업사항 심의를 위한 「가칭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 신설
 - * ①범부처 정책의 조정·지원, ②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③거래·등록 및 안전관리 등 심의
- **(법률소관)** 사용후 배터리 분류,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등 다부처 연관성 高 → 관계부처(기재·산업·환경·국토부) 공동소관

②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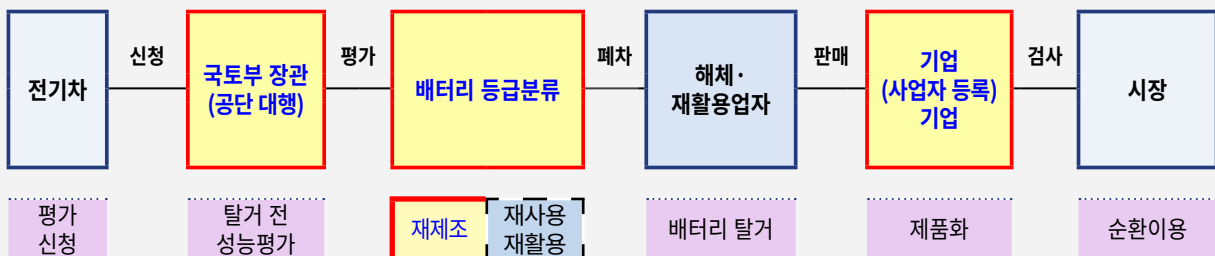
※ : 신규 도입 예정○ **현행** * 반납대상 배터리 ('20년까지 등록된 보조금 지급차량, 수출말소 차량 제외)□ **향후**

○ 반납대상 배터리



* 반납대상 배터리 성능평가 용량 확대 (現: 1~2대/일 → 향후 150대/일) 및 자동평가시스템 도입

※ 반납대상 배터리의 재제조 등급분류를 위한 국토부 성능평가기준 활용방안은 추후 구체화

○ **非반납대상 배터리**

<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리 >

- 사용후 배터리: 전기차 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탈거되어 사용종료된 배터리
- 재제조: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전기차 배터리로 재조립
- 재사용: 사용후 배터리의 부속품을 교체·수리하여 ESS 등 기타 용도로 재조립
- 재활용: 사용후 배터리를 파·분쇄하여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유가금속을 추출

< 추진 방향 >

[비전]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Closed-loop)” 완비

[정책목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① 「^{가형}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일반규정	성능평가	안전관리	제도·인프라
• 사용후 배터리 정의 • 사업자 등록 등	•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 유통 전 안전검사 • 사후검사	•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 재생원료 인증제

②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개별 시스템 구축('24~'26)	통합포털 개설('27)
• (산업부) 셀 제조, 거래·유통, 재사용 등 • (환경부) 전기차 보급, 충전, 재활용 등 • (국토부) 팩 인증, 운행·안전·폐차, 재제조 등	• 「통합포털 구축 TF」 가동('24~) • 개별 시스템 연계 → 통합포털 개설('27) • 이해관계자 간 정보공유 및 정책 활용

③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생산인증('25)	사용인증('25)
• (신청) 배터리 재활용기업 → 환경부 • (내용) 재활용 배터리를 파·분쇄하여 추출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	• (신청) 배터리 제조기업 → 산업부 • (내용) 배터리 제조 공급망을 추적하여 상품 내 재생원료 사용비율 인증

④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성능평가('27)	등급분류
• (평가대상) 폐차예정 전기차 및 사고·리콜 배터리 • (피평가자) ①전기차 소유주(폐차, 자발적 교환) ②보험업체(사고) ③완성차 제조사(리콜) • (평가주체) 국토부장관(교통안전공단 대행)	• 재제조(상등급): 전기차로 재조립 가능 • 재사용(중등급): ESS 등으로 재조립 가능 • 재활용(하등급): 재제조·재사용 불가능(폐기물) ※ 평가기술 및 장비보급을 위한 R&D 추진

⑤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거래원칙	사업자 등록제	운송·보관기준	거래정보 시스템
• 민간 자율거래 •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 유통·재제조·재사용·재활용사업자 등록	• 기존 규정을 보완한 기준 마련	• 단가, 물량 등 거래정보 취합

1. 산업부: ①「배터리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및 ②「거래정보 시스템」

- (대상정보) ①배터리 제조 공급망 및 제품 성능 관련 정보*,
②사용후 배터리 유통 및 재사용 이력 정보**

* 재생원료 사용량, 배터리셀 화학조성, 광물 함유량 등

** 거래 주체, 잔존가치 평가결과, 거래단가, 안전성검사 결과, 재사용제품 판매정보 등

- (활용계획) ①EU 배터리여권, 재생원료 사용인증, 공급망 실사 등 대응
②거래된 제품의 성능, 단가 등 결과 정보 분석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유통 정보를 통한 공급망 강화

2. 환경부: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 시스템」

- (대상정보) 전기차 인증·보조금 산정, 전기차 충전, 배터리 재활용 관련 정보*

*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한 배터리 성능·제원 정보, 충전 패턴·상태, 유가금속 회수율, 재생원료 성상·생산량·판매처 등

- (활용계획) 전기차 LCA* 평가관리**,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재활용 배터리 처리 및 재생원료 생산 관리

* Life Cycle Assessment: 제품 원료-유통·사용-폐기 전과정 환경영향 정량평가

** 환경부·국토부 공동(산업부 협의)으로 평가방법 마련(「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7)

3. 국토부: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관리 시스템」

- (대상정보)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등록, 전기차 운행(정비·검사·리콜), 성능평가, 폐차, 재제조 등 운행 및 안전에 필요한 이력 정보*

* 배터리 제작자 정보, 성능평가 결과, 안전검사 결과, 재제조 배터리 거래 정보 등

- (활용계획) 전기차 인증·등록부터 폐차까지 배터리 중심의 쉼단계 안전관리, 성능평가를 바탕으로 배터리 순환이용 및 신산업 연계

< 시스템 등록정보 활용 방법(안) >

분야	시스템 등록정보	활용
공급망	▶ 배터리 광물 소재 및 원산지 ▶ 재제조·재사용·재활용 현황	→ IRA, EU배터리법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및 광물별 통계·수급체계 구축 → 국내공급망 누수(무단폐기반출 등) 점검
시장거래	▶ 거래 · 주체 · 가격 · 물량 등	→ 거래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구조 분석, 시장실패시 보완대책 마련
안전·환경	▶ 배터리 사용정보 및 재사용이력 ▶ 재생원료 생산 및 사용인증	→ 배터리 화재 등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기획재정부

「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 발표
 -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산업을 지원하고
 현장규제 개선 추진

2024-07-10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한바, 이번 대책은 올해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 개선방안으로,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신속히 반영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함. **산업 지원 및 현장 애로·규제 해소를 위한 20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분기별로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속도감있게 개선키로 함**

* '24.3.13일, 「제1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 발표(비상경제장관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신산업 지원 >

① 자율주행·AI (3건)

-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9년까지 확대(최초 5년 +2년+2년)* 하고,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연장 신청 허용

* 안전성 검증을 거쳐 추가 연장하되, 여객자동차 내구연한(버스, 일반승용차 9년) 등 고려

- 자율주행용 필수 인프라인 정밀도로지도의 민간 활용 편의 제고 (자율주행차용 정밀도로지도의 품질향상을 위해 제작과정을 개선*하고, 2·3차원 도로지도도 모두 민간에 개방, 온라인 순차 제공**)

* 지도 정밀검수용 SW 개발 적용, 도로 내 촬영정확도 향상용 참조점 설치 등

** 정밀도로지도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온라인 제공 개시 →온라인 제공범위 순차적 확대

-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공공의 정밀도로지도를 연계·통합하는 관리 플랫폼 마련*

* 53개 기관이 참여 중인 자율주행 민관 협의체 「자율주행 디지털 맵 포럼」 활용

- AI 학습용 영상, 사진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이 많은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 부문 비정형데이터의 민간 제공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대상 가명정보 처리 교육과정* 신설·운영 추진

*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기획 과정(온라인)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 과정(오프라인) 신설

② 친환경 신기술 (5건)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대한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 관리 체계를 마련

-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및 기업부담 합리화를 위해 PET 재활용 의무자를 원료(PET 수지) 생산자에서 최종 제품(PET병) 생산자로 전환

- 판매 용도가 아닌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를 전제로 인허가·검사 간소화*

* 세부 방안은 연내 구체화(연구·개발용 시제품 대상 별도 간이관리체계 마련)

-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 및 설비 보급 지원*

* 히트펌프시스템(전기→열) 등 섹터커플링 기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 저장·활용하는 기술) R&D 실증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전해 장치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설치 허용(타당성 검증 후) 추진**

* 전기를 이용해 물(H₂O)을 분해하여 수소(H₂)를 생산하는 장치 제조업

** 전문가 검토(연구용역, 연내 완료)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 현장규제 개선 >

③ 투자·경영 애로 (6건)

-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활용의 신속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공간,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설치·관리 기준 개선('25년)
-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 마련
* (서울·부산) 50대, (광역시·시) 30대, (군) 10대 미보유시 사업면허 취소
- 노후 건축물의 개·보수 및 스마트화 등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3종의 해체공사*는 허가·신고 면제
- 공업화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례대상을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하고,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특례 추가 추진
- 물품(HW) 중심의 혁신제품(조달) 지정절차 개선을 위해 SW용 제품규격서 추가 및 실태조사서 보완(SW제품 대상 생산현장 사진 생략 등)
- 습식 사료의 유통 경제성 제고를 위해 기술적 타당성, 위해성 등 여부 검토 후 신규 공법을 적용한 보관방법 추가 인정 추진

④ 중소·소상공인 애로 (6건)

- 창업 초기기업의 R&D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ICT 분야 R&D 공모제한 요건 완화* 방안 마련
* 창업 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자본전액잠식 기업에도 공모 기회 부여 추진
-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26~'27년 한시운영)하고*, 운영경과에 따라 제도화 등 검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25.上) → 교육 수료자는 상영업무 시범 수행 가능('26~'27년)
- 재생에너지 발전 및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 및 설비 보급 지원*
* 히트펌프시스템(전기→열) 등 섹터커플링 기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 저장·활용하는 기술) R&D 실증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중소·영세 업체 외국인력 구인여건 개선을 위해 업체 간 외국인력 배정순위를 정하는 점수제의 항목 구성 및 배점 등* 개선 추진
* (검토안 예시) 신규 고용신청 인원수 항목 폐지 등
-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상 행정처분(영업정지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청소년보호법) 면책조항 마련
- 경력은 짧지만 유망한 인력이 다수인 정보보호산업의 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을 완화
- 스마트상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도입 후 후속 컨설팅을 지원하고, 既수혜 업체 대상 로봇기술 도입 등 고도화 프로그램 신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II)」 일람표

구 분		과 제 명	일정	본문
신산업 (8건)	자율주행 ·AI (3건)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 연장	'24.4Q	2
		▶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 제작과정 개선 및 데이터 공개 확대	'24.12.	2
		▶ 가명처리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원활한 획득 지원	'24.下	3
	친환경 신기술 (5건)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한 별도 관리체계 마련	'24.下	4
		▶ 폐플라스틱 재활용 의무 대상 합리화	'24.7.	4
		▶ 연구·개발용 수소용품 제작시 인허가·검사 간소화	'25년	5
		▶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관리설비 개발·보급 지원	'25년	5
		▶ 첨단업종에 수전해 장치 제조업 추가	'25.上	6
현장 규제 (12건)	투자· 경영 애로 (6건)	▶ 옥외 디지털 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규제 완화	'26년	7
		▶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25년	7
		▶ 경미한 건축물 해체공사 3종의 허가·신고 면제	'24.3Q	8
		▶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 관련 규제 특례 확대	'24.下	8
		▶ SW제품 특성을 반영토록 혁신제품 신청제도 개선	'24.7.	9
		▶ 습식사료의 유통용 보관방법 추가 인정	'24.下	9
	중소/ 소상공인 애로 (6건)	▶ ICT 분야 창업초기 기업의 정부 R&D 참여요건 완화	'24.12.	10
		▶ 영화 상영 인력의 자격요건 완화	'24.下	10
		▶ 신규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24.4Q	10
		▶ 선량한 숙박업주 보호를 위한 면책조항 마련	'24.下	11
		▶ 정보보호산업에 대한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제도 경력요건 완화	'25.3.	11
		▶ 소상공인 스마트기기 보급 지원사업의 현장체감도 제고	'24.12.	12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본격 가동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 즉시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가동
- 체계적인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조사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조사업무 기반을 착실하게 준비

2024-07-08

7.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가 본격 가동되고 앞으로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할 예정임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투자자수 기준*으로 주식시장의 약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가상자산시장 고유의 취약성**과 거래 관련 감시 및 조사체제 공백으로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임

*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 이행 가상자산 투자자수 : `21년말 약 558만명 → `23년말 약 645만명 (cf : `23년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소유자 약 1,416만명)

** 하나의 자산이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분산상장, 개장-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 증권신고서와 같은 공시정보 미약 등

이에 '23.7.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처벌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24.7.19. 동법이 시행되는 즉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가 개시될 예정임

그동안 금융당국은 법 시행 즉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조직·인프라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해 왔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에 각각 ①**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위임한 ②**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규**도 마련함**

* 금융위 : 가상자산과(총 9명 규모, '24.6.25.) / 금감원 : 가상자산조사국(총 17명 규모, '24.1.9.)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24.6.25 제정, 가상자산시장조사규정 및 시행세칙 : '24.7.10. 금융위 의결로 제정 예정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시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 심리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하여 ③**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구축을 지원*함**. 그 결과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내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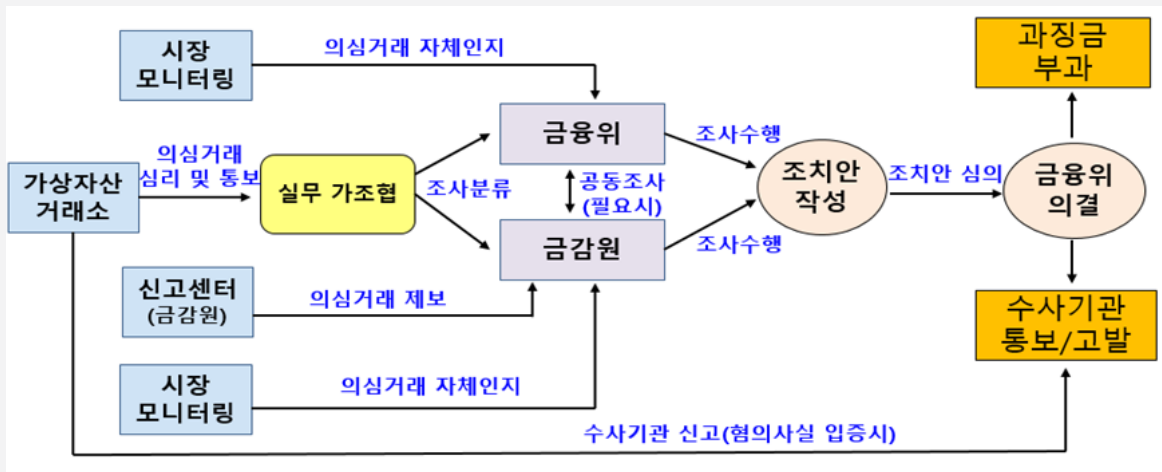
*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업계 자율규제) 마련 : '24.7.5.

→ 거래소의 매매자료 축적기준 / 이상거래 적출기준 / 이상거래 심리기준 / 협의사항에 대한 금융당국 통보 및 수사당국 신고기준 등을 모범사례로 제시

또한, 금년 1월부터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④**‘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음. 법시행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중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⑤**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였음. 조사의 후속 절차인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가동(7.1. 사전회의 개최)하였으며, 디지털정보 조작 등 IT 기술이 결합된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금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간에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6.27.)함

<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흐름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조사대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은 크게 ①미공개정보 이용 매매(법 § 10①), ②시세조종 매매(법 § 10②, ③), ③거짓, 부정한 수단을 활용한 거래(법 § 10④), ④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행위 매매(법 § 10⑤) 등으로 구분되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 금감원 신고센터를 통한 불공정거래 제보 접수, 자체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의심사건을 포착한 후 금융위·금감원 간 사건분류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게 됨

금융당국이 사용 가능한 조사수단은 장부·서류 및 물건의 조사와 제출요구(법 § 14①, ②), 혐의자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및 문답실시(법 § 14③), 현장조사 및 장부·서류·물건의 영치(법 § 14④) 등이다. 또한, 혐의거래와 관련된 거래소 심리자료의 분석, 온체인 가상자산거래 데이터의 분석, 금융거래정보 요구 분석 등 자료조사를 병행함

특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특성인 초국경성, 해킹 등 디지털기법 활용, 거래의 익명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감독당국 및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공조, 해킹 등 디지털 전산사고 진위 분석 등 자본시장 조사와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조사기법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조사결과 밝혀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수사기관 통보·과징금부과·경고·주의의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가상자산법 § 15·§ 17)하게 되며, 금융당국은 법시행 초기부터 일관성을 갖고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시장 경각심을 높일 계획임을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4-07-19 시행 예정

화재,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545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됨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한 경우에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제10조2항, 제17조의2제4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17 시행예정 (다만,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 예정)
---------	-----------------------------------	--

공급망 안정 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지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및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32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

이에 따라, 공급망 안정 관련 사업재편의 적용범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절차,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이 시설·장비를 매각하지 못하고 감축 또는 폐쇄하는 경우를 사업재편의 방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재편의 인정 범위 확대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 기업이 기존 사업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가동을 중지하여 시설·장비를 감축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를 사업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재편의 방식에 추가함

② 공급망 안정 관련 사업재편의 적용범위 (제4조)

- 공급망 안정과 관련된 사업재편의 대상 품목을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 및 경제안보품목 등으로 정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 해당 품목 관련 대체기술 개발 등을 공급망 안정 활동으로 정함

③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선정 (제17조의3 신설)

-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지원 내용 · 기간 및 지원 효과 등이 포함된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계획서 및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상생지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④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설치 · 운영 (제23조의2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하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재편 지원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10 시행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희망하는 자에게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5년마다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정하고,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 주요 유치업종 및 제한업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입주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그 내용을 적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9조의2제3항,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제31조제4항 신설, 제31조제5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2024-07-10 시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와 미래자동차 기술을 정의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며,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38호, 2024. 7. 2. 공포, 7. 10. 시행)이 제정됨

이에 따라,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지정 절차,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의 제출방법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정의 (제2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을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로 정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기후변화대응기술 등을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래자동차기술로 정함

②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절차 (제4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신청서에 직전 사업 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조직·설비·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③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의 제출방법 (제6조)

-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12 시행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528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됨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약사회, 한약사회,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사단법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를 제외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제22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12 시행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하고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추 것 등을 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을 원칙적으로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식,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서식,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식에서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각각 삭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취소 사유 마련 (제11조의3, 4, 6)

-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을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추 것,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으로 정함
- 공공심야약국 신청서식 및 지정서식을 구체화하고(별지 제7호의3, 4), 준수사항(운영시간, 휴무일 운영기준 등) 서면 교부 및 공공심야약국 지정효력 등 규정
-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 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정함

②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규정 (제11조의5)

③ 등록기준지 삭제 (별지 서식 제5호, 제7호의2, 제9호)

- 서식 내 등록기준지 항목 삭제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08 시행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민간배출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6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해당 민간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1종 및 제2종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구체화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조치기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범위를 전년도 하반기부터 해당연도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에서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추진실적 보고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1조의2 신설, 제12조제2항)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10 시행

(다만,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1조제1항제9호 신설, 제31조제5항제1호)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17 시행 예정

(다만,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주택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

이에 따라,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의 하자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3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48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24-07-17 시행 예정

일정한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여 매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0048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바닥구조의 두께를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바닥충격을 성능검사기관은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 총 500세대 이상인 시공자로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단지가 없는 시공자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별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값이 높은 상위 10개의 시공자를 우수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목구조* 공동주택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 층간바닥을 콘크리트 슬래브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4조의2제1호, 제14조의2제1호 각 목 신설, 제60조의10, 제60조의12 등)

* 주요 구조부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구성하는 구조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10 시행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확인·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은 그 확인·조정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초과분을 반환하거나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조제3항제3호,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 등)

국토교통부
환경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07-10 시행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7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 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6항, 제4조제2항제4호 신설, 제5조제6항, 제9조제1항, 제18조 신설 등)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07-10 시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97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취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5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09 시행

(다만,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그 관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비종사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려면 해당 영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하며,

종전에는 소용량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 기재사항 중 내용물의 용량 등 일부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용량 화장품은 화장품 기재사항 모두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조제2항제1호라목 삭제, 제8조제4항 신설,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제8조의6제1항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08. ~08.19.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 (안 제12조제3항제5의5 신설)
 -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행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함
- ②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수행 사무 추가 (안 제13조제5의2 신설)
 -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도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tel:02-2110-316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08. ~07.16.
-------	-------------------------------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②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안 제102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③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안 제102조의3)
-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의 접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안 별표20 제117호의2)

④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안 별표 22 제2호코목)

- 법 제4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장함
- 법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6,000만원)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전화: 02-2100-2673, 팩스: 02-2100-2679\)](tel:02-2100-2673)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11.
~08.12.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될 예정인 바,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판매규제 등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위임범위를 조정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품으로 추가 (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금융상품의 정의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소액후불결제”)을 추가

② 금융관계법률에 전자금융거래법 추가 (안 제2조제3항제8호의2 신설)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금융관계법률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추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로 포함함

③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 (안 제2조제5항제3호 신설)

- 금융회사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에 한함)를 추가

④ 대출성 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 (안 제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금융상품의 유형(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중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추가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임대상에서 제외 (안 제32조제2항)

-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금융감독원장 위임사항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전화: 02-2100-2524, 팩스: 02-2100-2999\)](tel:02-2100-252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2024-07-08 발의
현행법에서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부감사기구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의무가 내부감사기구에게만 있고, 감사인이나 내부감사기구가 통보나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해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지적하는 사례가 200여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한 사례는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내에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이 통보 및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2조 및 제47조 등)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2024-07-08 발의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하므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공요구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2020헌가5, 2022. 2. 24. 결정) 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해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등 16인)

2024-07-08 발의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제품 가격도 줄지어 인상되고 있음. 그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을 속여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의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스킵플레이션(Skipflation)”을 사업전략으로 구사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현행법상 표시의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용량 또는 품질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 전후(前後)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4-07-08 발의

2023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만 14세 미만 아동뿐만 아니라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 활동이 더욱 활발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하여야 하는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 이념을 가진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의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안 제5조제3항)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2024-07-08 발의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하여 현행법에 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보험금의 한도는 1인당 국내 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23년 동안 5천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예금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5년 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험금 한도 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더 나아가 보험금 지급 결정 등을 심의하는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제3항)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2024-07-08 발의

공매도는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메일·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고 차입 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대차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음.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원인은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6조제31호의2 및 제447조의3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4-07-10 발의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이익배당은 결산 이후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즉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된 뒤, 수개월 이후에야 배당금을 확정하는 방식임

그런데 이 경우 투자자가 배당금이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한 채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는 배당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다르고, 장기투자를 어렵게 하여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65조의1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2024-07-09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법인만 등록이 가능한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으로, 시·도 등록대상의 경우 법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는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도 등록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등록 및 폐업이 빈번하여 서민층의 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최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자의 난립과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024-07-09 발의

미등록대부업자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도 하지 않고, 초고금리 및 불법 광고로 저신용자들의 피해를 양산함

미등록대부업자는 불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적발 시에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불법사금융’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하며 활동하는 미등록대부업자들은 사회에서 퇴출되지 않고 있음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미등록대부업자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며, 등록대부업자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에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려 함

이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 (안 제8조 및 제11조 등)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7-10 발의

현행법령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법정 우대수수료를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감액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제3항)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2024-07-10 발의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 불공정행위로부터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지급능력이 넉넉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가 경영상의 곤란을 겪을 수 있고, 사후에 비용분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에 한정하여 보장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협요청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2조의2 신설)
- ②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함 (안 제12조의6)
- ③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함 (제13조제2항)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 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여 단체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 시 청문 절차를 신설함 (안 제14조의3 신설)
- ⑥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33조)

- ⑦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안 제37조의2제2항)
- ⑧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안 제41조제2항)

정무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등 19인)

2024-07-10 발의

지난 2013년 이른바 ‘남양유업 갑질사태’를 계기로 2015년 12월에 제정되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 공급업자(본사)의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대리점은 가맹사업 정도의 본사 종속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으나 본사가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본사와 대리점사업자 간에 일정수준 이상의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하지만 현행법은 단체결성 및 교섭 요청에 관한 권한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아, 단체결성을 통한 대항력이 부재하다 보니 본사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각종 부당·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단체를 결성하고, 거래조건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거래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대리점 사업자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적용제외 대상을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2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자인 공급업자로 축소함. 다만, 계약을 맺은 대리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 ② 대리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해당 대리점과 합의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 ③ 대리점이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서면으로 갱신거절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 (안 제5조의3 신설)

- ④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 (안 제5조의4 신설)
- ⑤ **대리점단체의 구성을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를 요청받은 공급업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함** (안 제5조의5 신설)
- ⑥ 공급업자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하여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것을 규정함 (안 제10조의3 신설)
- ⑦ **공급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게 광고·판촉행사를 강요하거나 광고·판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의4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3인)

2024-07-08 발의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2024-07-08 발의

국제사회는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어, 투자는 많이 했으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법인세는 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정부는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초기 투자가 절실한 첨단산업의 경우 미래보다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기업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더 절실한 실정임

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의2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9인)

2024-07-08 발의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

주요 경쟁국은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인력 육성, 자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 중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 지원해 투자 대비 실질 정부 지원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실질 지원율이 세액 공제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한국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고, 이마저도 일몰되거나 될 예정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임

현재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커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고,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하며,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각각 10%씩 상향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안 제10조제1항)

- '21년 하반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3.6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24년 말 일몰 예정임.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설비·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며,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 소요됨을 고려하여, 기업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34년까지 향후 10년간 일몰을 연장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자 함

②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안 제10조제1항 및 제144조)

- '21년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으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쟁국 대비 짧은 이월기간(10년)은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큼. 이에 당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경쟁력 수준(미국 20년)으로 이월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③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안 제10조제1항제2호)

-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5%로 CHIPS and Science Act 시행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 중인 미국보다 낮음. 한국 기업 등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특히 국내 투자 대신 미국 내 투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40%로 각각 10% 상향하고자 함

④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간주 (안 제24조제1항제2호)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설비 투자는 첨단기술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간주하지 않아 기본공제율(1%)이 적용되어 왔음. 연구개발 시설도 생산시설과 동일 수준의 고사양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⑤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일몰 연장) (안 제24조제1항제3호)

-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최근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가 12년 만에 부활했지만, 경기 부진 탓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23년 한 해만 시행되고 일몰됨. 이에 기업 투자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26년까지 향후 3년간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2024-07-09 발의

유럽은 2026년부터 역외 생산품의 수입시 유럽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예정하고 있고, 미국 또한 미국판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청정경쟁법(CCA)'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 위주의 국내 제조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및 탈탄소 산업기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책이 시급한 상황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공급망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제조업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탈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와 역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음.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제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이 주요국 대비 크게 부족하여 태양광·풍력 등 유망 탄소중립 산업의 생산기반이 국외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4인)

2024-07-09 발의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71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3인)

2024-07-11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1항제2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2024-07-12 발의

현행법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법인세를 내야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적용받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는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함.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매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설정된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제2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2024-07-10 발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1 입주권은 2주택이 되어 입주권 및 주택의 양도 시 다주택자 종과세율이 적용되어 1+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입주권을 소유할 때, 입주권 동시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세의 세액을 일정 부분 경감하고, 해당 입주권으로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중 하나를 소유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정책 참여의 순환을 만들면서 양질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98조의9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2024-07-10 발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이하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종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지 제한되어 있어 1+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안 제9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2024-07-10 발의

현행법상 외국환중개업은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에 대한 중개만을 의미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등 고객과 금융기관 간 거래에 대한 중개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 및 가격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출기업 등 개별 고객들의 환전 편의와 가격 선택권을 제고하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및 제9조)

또한,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계획임. 그런데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년) 이후 채권의 전자등록업무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발행 및 등록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국은행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한국은행이 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72조가 국채 중 국고채에만 적용되고 있어 원활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도 같은 내용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한국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조화롭게 규율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72조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원활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3조제13항 및 제14항)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2024-07-08 발의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주요 농산물의 급격한 가격변동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상 제도적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 등으로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補填)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의2 신설)
- ②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함 (안 제16조의2 신설)
- ③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 선정, 품목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6조의3 신설)
- ④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 (안 제5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1인)

2024-07-09 발의

농·수산업은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오며 헌법에도 농·어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가차원의 중요한 산업임

최근 기후위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하여 유류를 비롯한 물가가 상승하여, 전반적인 생산비도 증가하며,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함. 이에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하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며 농어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농어민의 이탈을 야기하여 생산자가 부족하여 결국 식량안보 위협까지 직결될 수 있음

이를 위해 미국과 EU는 일부 품목을 선정하여 목표가격을 선정한 후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 정부는 경제성 논리로만 일관하며 반대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농수산물 중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목표·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그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하려는 취지임 (안 제16조의2 및 제57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법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수산부장관의 우선구매 요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하고 컨설팅 서비스의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들이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태풍 등으로 양질의 소금을 생산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소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승하여 이로 인한 천일염 제조업자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문화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지정함과 동시에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소금산업의 진흥 및 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소금을 제공하고 아울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집단급식시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규격품 또는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구매한 경우 전년도 구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함 (안 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 ②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등을 널리 알리고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3월 28일을 소금의 날로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신설)
- ③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 등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대상에 소금 제조 기술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현황 및 컨설팅 실시 기관의 활동실적을 공표하도록 함 (안 제20조제1항, 제20조제3항 신설)
- ④ 국가로 하여금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소금제조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20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구의원 등 11인)**

2024-07-10 발의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과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이나 수거·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7-08 발의

현행법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관련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 기업, 지역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등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계층에 전가하지 않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에 고용영향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이 고용안정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4인)

2024-07-09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 활성화에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2항)
- ②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함 (안 제21조의4 신설)
- ③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해당 위탁기업에 대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1조의5 및 제43조 제3항제3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송재봉의원 등 40인)

2024-07-09 발의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 특별법”이라 한다)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정부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음

「전통시장 특별법」상의 골목형상점가(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점포 밀집)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의 상권 1/2의 상업지역 내 100개 이상의 점포 기준은 대도시 밀집지역에서나 가능한 요건으로 대다수 중·소 시·군·구에서는 법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골목상권은 기존의 전통시장 등과 달리 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되어 있고 지역의 주민·문화·자원 등과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통시장 특별법」등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음

경기도, 부산시, 제주도 등에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안 제3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안 제4조)
-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관할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안 제5조)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안 제6조)
- ⑤ 지방자치단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안 제7조)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협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골목상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안 제8조)
- ⑦ 시·도지사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등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제9조)
- ⑧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회원 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해야 함 (안 제10조)
-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역량강화 교육,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 매니저선발·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안 제12조)
- ⑩ 골목상권 공동체 내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안 제16조)

전「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현재 78개에 달하고, 위원회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약 절반이 반도체 기술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투자 비용의 92%가 반도체 산업에 몰려 있는 등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자국 내 투자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용수 등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도 국내 기술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의 기술 유출 방지·인재 육성 및 유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치는 다른 주요 국가보다 미흡한 실정임.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좌우하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점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간주하여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신설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자국 중심 국가반도체산업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실행계획 수립·시행을 병행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굳건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보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③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함 (안 제9조)
- ④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과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가 전력

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확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0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하여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국가반도체산업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1조)
- ⑥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할 수 있음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⑧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반도체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안 제18조제2항·제3항)
- ⑨ 국가반도체산업 전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체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역법」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8조제4항)
- ⑩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 (안 제20조)
- ⑪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를 설치함 (안 제25조)
- ⑫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행위 발생 시 신고 조항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을 규정함 (안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 ⑬ 사법경찰관리는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시 문서와 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음 (안 제35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등 13인)

2024-07-10 발의

현재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그동안의 분업구조를 깨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장까지 선점하려는 전략을 시행하여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게다가 AI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열리면서 전 세계 반도체 생태계의 전면적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 되어온 반도체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산업의 관련 규제,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전력 및 용수지원 등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대한민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조 및 제3조)
- ② 정부는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반도체산업 관련 동향조사 등과 통계를 작성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③ 반도체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는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함 (안 제7조)
- ④ 정부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걸쳐 세계최대 규모의 광역적 범위의 반도체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운영, 생산시설 및 인력확보 등을 위하여 각종 특례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 ⑤ 반도체메가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전력 수급과 용수확보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은 부담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함 (안 제9조)
- ⑥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을 위해 정부가 반도체 설계기술, 연구개발, 고용유지, 근로자의 복지, 산학협력, 특화 교육, 석·박사 인재양성, 해외 우수인력 유치 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함 (안 제12조)
- ⑦ 정부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성능검증 및 실증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함 (안 제13조)
- ⑧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연구개발, 경영 등에 있어서 지원하도록 하되, 정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관련 시설·장비에 투자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안 제15조)
- ⑩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사업행위나,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에서의 보조금 지급, 기반시설설치,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우선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함 (안 제16조 및 제17조)

- ⑪ 반도체메가클러스터 내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완화와 반도체관련 중소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등을 규정함 (안 제18조)
- ⑫ 정부로 하여금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자금지원, 테스트베드 지정·운영, 국내 소부장·시스템반도체제품 우선구매 시 조세·재정지원, 국가핵심인재지정·지원, 클러스터 내 소부장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조성·부지할당·임대료감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 ⑬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소부장 첨단 연구개발단지, 시스템반도체융합 연구개발단지 지정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별표를 개정함 (부칙 제3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024-07-10 발의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입찰시장 관리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 관련”, “안전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을 지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경우 그 지정 요건을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판매 또는 수소 관련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한 사업으로서,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법인”에 해당하는 기관의 범위가 제한되어 업무에 적합한 기관·단체·법인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현행법상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업무의 특성에 관한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적합한 기관·단체·법인이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경제의 체계적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4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2024-07-11 발의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가격보조, 용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이 여전히 커 확산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소형자동차 규격에 맞는 소형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확대 지급하여 보급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자동차의 경우 시행령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나 보급의 촉진을 위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보조금을 확대 지급을 법안에 명시하고자 함

이에 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비 정률로 100분의 5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8인)

2024-07-11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사전에 화재위험에 대비하거나 화재 발생 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2024-07-12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서 직접 주유를 해주거나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 반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 충전기가 너무 높이 설치되어 있거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볼라드)과 충전기 사이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함께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2024-07-11 발의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권역별 경쟁을 통해 지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수도권과 권역이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수도권의 대형병원 등에 밀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음.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제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에 나서고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제주도에서 도외로 원정 진료를 떠난 도민은 11만 3,820명에 이르고 1,870억원의 의료비가 쓰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3조의4)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2024-07-12 발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의 불안정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어 의약품 조제·투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시기 지연 등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과 수입, 유통개선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68조의13부터 제68조의18까지, 제95조제1항제10호의4 및 제10호의5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2024-07-08 발의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의 경우에도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며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등 법률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계층을 배제시킨 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며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국가적 비전으로서 그 과정에서의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에 전가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참여 원칙은 현행법의 핵심가치임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5조제5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2024-07-11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2024-07-08 발의

최근 지역 개발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정부는 보조금 중심의 예산 지원을 펼치고 있음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낙후된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 주도형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하고 민감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도입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제4항, 제27조의3 및 제57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2024-07-08 발의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음.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29조의4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

2024-07-09 발의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대란·교통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화 현상은 물론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음. 실제 「택지개발촉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1980년대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및 신도시 지역 등의 재건축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한편, 철근 콘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 RC조)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 형태 및 환경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도시 내 공원·녹지 비율 및 공공부지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철근 콘크리트 방식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 등 내장재 내구수명은 30여 년인 것에 반해 골조 및 외관은 80년 이상으로 내구수명 불균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 주민 안전문제, 부동산 투기 활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체 도시 부재 시 전세대란·교통대란을 방지하고, 도시 내 공원·녹지 비율을 높이는 도심 재구성을 통한 공공부지를 확보하며, 내장재 및 골조간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서 철골구조(Steel Frame Construction)로 전환하는 등 도시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하는 주거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들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2024-07-09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가 장기 해외건설진흥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분야별 추진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라 함)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등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이 수립·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외건설진흥위원회는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을 비롯한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책임있는 운영과 업무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임

이에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립절차,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일부 사항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고,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여, 해외건설진흥계획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및 제17조의3 등)

국토교통위원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임종득 의원 등 10인)

2024-07-10 발의

충청남도·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부권을 아우르는 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가 없어 해당 지역의 여객·물류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규제의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여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부경제권 조성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자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4조)
- ③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안 제5조)
- ④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안 제6조)
- ⑤ 기획재정부장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⑦ 시·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⑧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추진단을 두도록 함 (안 제13조)
- ⑨ 국가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⑩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2024-07-10 발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실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의 증가로 인한 상권침체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관내에 위치하는 빈 건축물의 수, 발생 사유 등 빈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빈 건축물의 방치기간, 종류 및 용도, 발생 사유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와 빈 건축물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7/19(금) 10:0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정무위	전체회의	7/17(수) 16:00	- 간사 선임 - 소위 구성 - 인사청문회 계획 채택의 건
기재위	전체회의	7/16(화) 10:00	- 국세청장 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과방위	전체회의	7/16(화) 14:00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 법안 상정 등
행안위	전체회의	7/16(화) 14:00	-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7/16(화) 10:00	- 업무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24개 기관)
복지위	전체회의	7/16(화) 10:00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법안 상정 -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
환노위	전체회의	7/16(화) 10:00	- 국무위원 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
국토위	전체회의	7/17(수) 11:00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보고 - 법안 상정 등
여가위	전체회의	7/18(목) 11:00	- 간사 선임 - 소위원회 구성의 건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7/16(화) 10:00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등	7/15(월) 08:00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특강	윤재옥·김 건 의원실 등	본청 182호
	7/15(월) 10:00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	김문수·문정복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15(월) 14:00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문진석·이정문· 이재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5(월) 14:00	더새로 제1차 정책혁신 토론회 :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	김준혁·이재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5(월) 14:00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증언대회	정혜경·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6(화) 08:00	순풍(順風)포럼 창립총회	김재섭·박준태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6(화) 09:30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제정 국회토론회	김선민·전종덕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7/16(화) 10:00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엄태영 의원실, LH토지주택연구원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6(화) 10:00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정성호·김영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6(화) 10:00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	김승수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16(화) 10:00	학교예술강사 노동실태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제점 공유를 위한 국회간담회	이기현·민형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실
	7/16(화) 14:00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 :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될 것인가?	강명구 의원실, 한국회계학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6(화) 14:00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박상혁·진성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6(화) 14:00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박지혜·김성환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7/16(화) 14:00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진선미·김태년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7/16(화) 14:00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민병덕·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7/16(화) 14:00	통일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공청회	권철승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실
7/16(화) 15:00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민주화 이후의 공화주의와 개헌	서왕진·민형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17(수) 07:30	국회 바다와미래 연구포럼 창립기념 초청특강	조승환·주철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의원식당
7/17(수) 10:00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	국회사무처	의사당 중앙홀
7/17(수) 10:00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M&A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강훈식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17(수) 10:00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토론회	박지혜 의원실, 에너지전환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7(수) 12:00	[노동입법 세미나 7강] 양노총 입법요구과제 설명	김주영 의원실, 민주노총 등	의원회관 306호
7/17(수) 14:00	[오송참사 1주기 국회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이연희·임호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7(수) 14:0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	강선우·김윤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17(수) 14:00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서영석·김윤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7/17(수) 14:00	저탄소 경제사회를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 입법토론회	김소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7(수) 15:00	2023 교사 대투쟁이 남긴 과제 교육 정책 및 입법의 전문성 강화	백승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8(목) 10:00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 포럼 창립식 및 기념특강	안태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8(목) 10:00	방송장악 대폭로 및 방송영구장악 3+1법 폐기 그리고 공영방송의 미래	김장겸·김기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8(목) 10:30	(22대 국회에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제안	김남희·강득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7/18(목) 13:00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강경숙·김영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8(목) 14:00	2024 기후위기 시대, 건설 분야 복합재난·재해 대응 방안 국회 포럼	이상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8(목) 14:00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한류 지속성 강화 정책토론회	임오경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8(목) 17:00	경기남부 용인과학고 유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언주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9(금) 10:00	한반도정책, 미래를 위한 출발	김건 의원실, 외교부	국회도서관 강당
	7/19(금) 14:00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정혜경·이재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실
	7/19(금) 14:00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방사선사의 업무와 역할	남인순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자료집 등	7/15(월)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 (제2024-5호)」발간	국회사무처	
	7/15(월)	「이달의 입법민원」(2024. 6월호) 발간		
	7/15(월)	「THE 현안」제19호 발간 - 최저임금	국회도서관	
	7/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50호 발간 - 유럽연합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7/17(수)	「Data & Law」2024-7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개인정보보호		
	7/17(수)	「금주의 서평」제687호 발간 - 도서명 : 침몰하는 일본은행? - 저자 : 니시노 도모히코		
	7/16(화) 09:30	제22대 국회 개원 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9(금)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 제4호 발간		
	7/16(화) 10:00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처 대회의실
	7/18(목) 16:00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제10차 회의 개최		조사처 부속회의실
	7/15(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2호 발간 - 청년의 지역 거주의향과 삶의 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3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8(월)	「THE 현안」제18호 발간 - 주요국 도시재생 사례	국회도서관	
	7/9(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49호 발간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7/10(수)	「금주의 서평」제686호 발간 - 도서명 : 관계인구의 사회학 - 저자 : 다나카 데루미		
	7/10(수)	「World&Law」제2024-13호 발간 - 파리, 하와이, 베니스... 여행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7/11(목)	「현안, 외국에선?」제86호 발간 -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방안		
	7/8(월)	사업평가보고서 발간 -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7/11(목)	「이슈와 논점」2258호 발간 - 복려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	국회입법조사처	
	7/12(금)	「이슈와 논점」2259호 발간 - 민법에 남은 성(性) 불평등 조항 : 부성(父姓)우선주의에 대한 검토		
	7/8(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1호 발간 - 트럼프 2.0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08~07.14)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10(수)	ESG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EU 삼림 전용 방지 규정) : 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
7/10(수)	조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7/11(목)	지적재산권	가수의 성명(“영탁”)을 자사의 상품에 무단사용한 행위에 대해 표지의 사용금지 및 생산된 제품의 폐기청구 인용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7/12(금)	바이오/헬스케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에 수록된 보건·의료 분야 관련 주요 사례 소개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